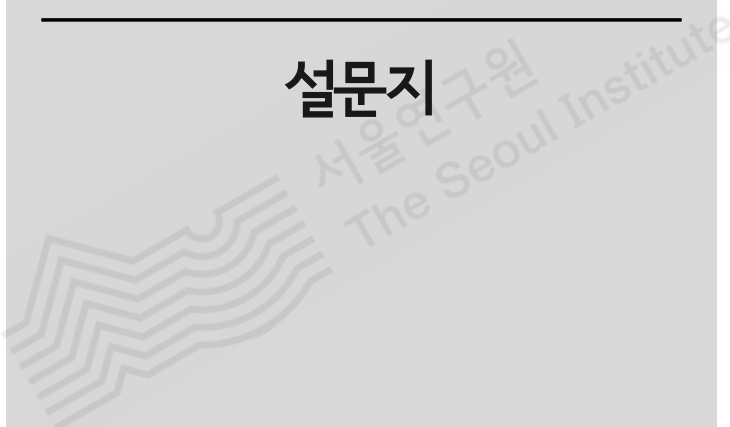


부록

설문지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의 의뢰로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응답은 서울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귀하께 여쭙볼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 %’ 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설문은 10분 정도가 소요되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조사 기관 설문 및 상품권 문의 연락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2부 박정석 과장 (Tel. 02-3014-1017)
(설문지 회수 FAX : 02-3014-1050, E-mail : jspark@hrc.co.kr)

연구 실무 문의사항 연락처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황원실 연구원 (Tel. 02-2149-1008, E-mail. hwspost@si.re.kr)

연구 책임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 ▶ 보기를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항목들의 번호를 () 안에 기재해 주시고, 해당 항목이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조사기간 : 2018. 8. 28 ~ 9. 7
▶ 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2	귀하의 현재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공무원 ② 학계 ③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④ 민간기업 ⑤ 공공기관** ⑥ 시민사회단체 ⑦ 지역주민단체 ⑧ 기타()

*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는 법조인, 언론인, 컨설턴트, 협회 소속 전문가 등

** 공공기관은 행정조직에 의해 설치된 공공조직을 모두 고려

1. 서울시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서울시 민간위탁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가 보시기에 공공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 ② 민간의 능률성 활용
- ③ 민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 ④ 민간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 ⑤ 서비스 공급의 경쟁구조 조성
- ⑥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
- ⑦ 비용절감 효과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2. 귀하는 현재 민간위탁제도가 현 시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시정에 크게 기여
- ② 시정에 약간 기여
- ③ 시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 ④ 시정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3. 귀하가 보시기에 민간보조사업과 비교해 민간위탁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서울시가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 ① 양자 간의 차이를 잘 모르겠음
- ② 운영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대상사무(사업)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 ③ 민간위탁사업/민간보조사업의 개념 정의 차이
- ④ 민간위탁제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
- ⑤ 민간위탁제는 계약을 통해 갑-을 관계가 형성
- ⑥ 민간위탁제는 계약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
- ⑦ 민간위탁제는 사업계획수립에서 자율성이 낮음
- ⑧ 민간위탁제는 예산전용이 상당히 어려움
- ⑨ 대상사무(사업)가 근본적으로 다름
- ⑩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제도에서는 대상사무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유형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 민간위탁관리지침상 민간위탁 유형은 크게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과 수익창출형으로 나뉘며, 평가에 있어서는 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형으로 나뉨

- 시설형 위탁: 청소년수련관, 병원, 자원회수시설 등
- 사무형 위탁: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등

- 수익창출형: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DMC단지 관리 등
- 중간지원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혁신센터 운영 등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1. (4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무형과 시설형 구분은 적정하나, 중간지원형은 이질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② 수익창출형도 모두 시설형으로,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만으로 적정
③ 현재와 다른 보다 세분화된 새로운 민간위탁 유형화 필요
④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5. 귀하는 민선 5·6기 시정의 핵심 기조였던 “협치시정 실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제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전반적으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음
② 그런대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③ 위·수탁자 간 관계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④ 수탁자의 사업운영방식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다소 남발되는 것 같음
⑥ 민간위탁 사무로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음
⑦ 위탁자의 관리·운영 방식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⑧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음
⑨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

6. 귀하가 보시기에 향후 민간위탁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대폭 확대될 것이다
② 다소 확대될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될 것이다
④ 다소 줄어들 것이다
⑤ 대폭 줄어들 것이다

7. 귀하가 보시기에 민간위탁을 둘러싼 주체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 위탁자(행정)와 수탁자(운영주체)의 관계가 ①~⑦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1. 위계적(갑·을 관계)

수평적(동반자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2. 위수탁자는 단순 계약관계

위수탁자는 강한 신뢰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7-2. 수탁자(운영주체)와 이용자의 관계 ①~⑦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운영과정이 폐쇄적

운영과정이 개방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II. 서울시 민간위탁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

- ◆ 다음은 서울시 민간위탁제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 12번부터 17번까지는 민간위탁담당기관(수탁자)에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8. 귀하는 위탁자나 수탁자로서 민간위탁제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위탁자로 참여하고 있다(경험이 있다)
- ② 수탁자(민간위탁기관임)로 참여하고 있다(경험이 있다)
- ③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

8-1. (8번의 ①②응답자만)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9.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 선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서가 원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사무로 선정
- ② 위탁사무 선정과정이 매우 까다로움
- ③ 선정과정이 비교적 허술함
- ④ 위탁사무 선정기준이 불분명함
-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0. 귀하(귀기관)는 민간위탁의 사업계획(예산계획 포함)이 실제로 어떻게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 ①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립
- ② 사업에 관련된 주체들과 협의하여 수립
- ③ 위탁기관이 제시한 지침대로 수립
-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 공동으로 수립
- ⑤ 위탁기관이 대부분 수립해서 하달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1. 귀하(귀기관)는 당초 사업계획(예산계획)을 수정이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수탁자의 요청대로 수정·변경
- ② 위탁자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수정·변경
- ③ 미미한 수준에서의 수정·변경만 가능
- ④ 수정·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수행
- ⑤ 수정이나 변경해야 할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⑥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 다음 12번에서 17번까지는 민간위탁담당기관(수탁자)에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 위탁자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중이신 경우에는 18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12. 귀하(귀기관)가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있습니까? ()

- ① 매우 적극적 ② 비교적 적극적
 ③ 미미한 수준의 참여 ④ 참여 없음

13. 귀하(귀기관)는 위탁기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운동(인력규모 변경, 실제 채용, 해임 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① 계약 시 정해놓은 규정대로 엄격하게 운영
 ② 위탁기관의 승인을 거쳐 인력운동
 ③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자율적 운용
 ④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한 후에 위탁기관에 통보
 ⑤ 수탁기관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용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4. 귀하(귀기관)는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 (, , ,)

- ① 민간위탁금 ②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③ 기부금 및 후원금 ④ 공모사업
 ⑤ 서울시의 현금 및 현물 출자 ⑥ 모법인의 전입금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4-1. 연간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00% 민간위탁금 ② 80% 이상 ~ 100% 미만
 ③ 50% 이상 ~ 80% 미만 ④ 20% 이상 ~ 50% 미만
 ⑤ 20% 미만

15. 귀하(귀기관)는 민간위탁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법인전입금을 부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네 ② 아니요

15-1. (15번의 ①응답자만) 법인전입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민간위탁금의 5% 미만
 ② 민간위탁금의 5% 이상~8% 미만
 ③ 민간위탁금의 8% 이상~10% 미만
 ④ 민간위탁금의 10% 이상~20% 미만
 ⑤ 민간위탁금의 20% 이상~30% 미만
 ⑥ 민간위탁금의 30% 이상

15-2. (15번의 ①응답자만) 법인전입금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큰 부담이 됨 ② 다소 부담이 됨
 ③ 전혀 부담이 없음

15-3. (15번의 ①응답자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

- ① 모법인 자체재원으로 부담
 ② 후원금이나 기부금 활용
 ③ 법인전입금 조달을 위한 변칙적 회계운용
 ④ 은행 등에서 차입
 ⑤ 개인자금으로 조달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6. 귀하(귀기관)는 민간위탁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부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네 ② 아니요

16-1. (16번의 ①응답자만) 이행보증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민간위탁금의 5% 미만
 ② 민간위탁금의 5% 이상 ~ 7% 미만
 ③ 민간위탁금의 7% 이상 ~ 10% 미만
 ④ 민간위탁금의 10% 이상 ~15% 미만
 ⑤ 민간위탁금의 15% 이상 ~ 20% 미만
 ⑥ 민간위탁금의 20% 이상

◆ 다음은 서울시 민간위탁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8.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민간위탁제가 안고 있는 주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

- ① 위·수탁자 간 갑-을 관계의 지속
- ② 수탁기관(운영주체)의 자율성 부족
- ③ 위탁사무 유형별 구분의 부적절
- ④ 위탁기관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
- ⑤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 부족
- ⑥ 공공예산에의 과도한 의존성
- ⑦ 허술한 민간위탁사무 결정과정
- ⑧ 새로운 사무들과 부합하지 못한 제도적 틀 유지
- ⑨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나 역량 부족
- ⑩ 특정 주체의 독점과 신규 주체의 진입장벽
- ⑪ 성과와 효율 중심의 민간위탁 운영체계
- ⑫ 민간위탁 제도적 절차의 불합리성
- ⑬ 운영기관의 부정·비리
- ⑭ 수탁기관의 책임성 부족
- ⑮ 수탁기관의 예산 비효율·성과낭비
- ⑯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9. 귀하가 보시기에 민간위탁의 제도적 절차(또는 기준)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민간위탁 사업적격자 선정절차
- ② 민간위탁 사업적격자 선정 평가체계
- ③ 법인전입금이나 이행보증금 규정
- ④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 ⑤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 ⑥ 민간위탁사업 회계 및 재정 절차(기준)
- ⑦ 민간위탁사업 인사 및 고용 절차(기준)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0.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0-1. (20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선정기준의 모호
- ② 선정 관련 실제적인 심의과정이 부재
- ③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불투명·불공정
- ④ 운영평가위원회가 형식적 운영
- ⑤ 심사를 위한 평가지표가 불합리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1.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민간위탁제도에서 수탁자(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적절
- ⑤ 매우 부적절

21-1. (21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투명·불공정
- ② 선정심사를 위한 평가지표 불합리
- ③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의 부족
- ④ 참여기관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나 수단 부재
- ⑤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 존재
- ⑥ 실효성 있는 심의절차 운영을 위한 노력 부족
-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2. 귀하가 보시기에 새로운 주체가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데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낮다 ② 약간 낮다
-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높다
- ⑤ 매우 높다

**22-1. (22번의 ④⑤응답자만) 진입장벽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선정지표가 기존 운영주체에게 유리하도록 구성
- ② 재계약 위주의 위탁기관의 관심이나 행정편의
- ③ 역량 있는 신규 주체들의 부족
- ④ 지나치게 긴 민간위탁 계약기간
- ⑤ 법인전입금에 따른 부담
- ⑥ 신규 주체들의 사업 참여경험 부족
- ⑦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3. 귀하가 보시기에 현행 민간위탁제도에서 예산 및 회계 운용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 ② 비교적 적절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
- ⑤ 매우 부적절

23-1. (23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 ① 방만하고 낭비적인 예산운용
- ② 민간위탁예산에 대한 정산절차의 존재
- ③ 위탁기관(담당부서) 주도의 예산편성
- ④ 자율적 예산운용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절차나 기준
- 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의 불합리성
- ⑥ 불합리한 인건비산정 기준
- ⑦ 위탁기관(담당부서)의 일방적 예산삭감
- ⑧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부재
- ⑨ 까다롭고 번거로운 회계관리체계 운용
- ⑩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4.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민간위탁제 계약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민간위탁제 계약기간은 보통 3년이고, 복지분야의 경우 5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4-1. (24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긴 계약기간으로 인해 독과점 형성
- ②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경험과 역량 축적이 어려움
- ③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고용상의 불안정 유발
- ④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중장기적 사업전략 추진이 어려움
- ⑤ 분야별·사업별 차별적인 계약기간 미반영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5. 귀하가 보시기에 민간위탁 계약과정에서 법인전입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5-1. (25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법인전입금의 규모가 부적절
- ②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불합리
- ③ 법인전입금 조달을 위한 번칙적 회계처리가 발생
- ④ 수탁기관에 과도한 재정부담 유발
- ⑤ 민간위탁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공정한 제도적 규정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6. 귀하가 보시기에 민간위탁 계약과정에서 수탁자가 이행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6-1. (26번의 ④⑤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쌍방계약인데, 수탁자 부담은 불합리
- ② 사무의 위탁에 따른 것이므로 위탁자 부담이 타당
- ③ 수탁기관 여건에 따라서는 재정부담 유발
- ④ 이행보증금은 필요하나 부담규모가 부적절
-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7.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민간위탁 평가체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 ② 비교적 적절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7-1. (27번의 ③④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체계 운용
- ② 지나치게 성과와 효율 일변도의 평가
- ③ 사전에 사업목표와 평가지표에 대한 협의절차 미흡
- ④ 이용자나 주민의 평가과정 참여 부재
- ⑤ 사무 유형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평가체계 부재
- ⑥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 ⑦ 위탁자 주도의 평가절차 진행
- ⑧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도 부족
- ⑨ 평가주체의 전문성·역량 부족
- ⑩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 평가의 실효성 부족
- ⑪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Ⅲ. 민간위탁제 합리적 개선방안

28. 귀하는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위·수탁자 간 갑-을 관계의 개선
- ② 수탁기관(운영주체)의 자율성 강화
- ③ 민간위탁 당사자 협의체 구성·운영
- ④ 위탁기관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 ⑤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 확대
- ⑥ 민간위탁사무 선정·심의체계 대폭 정비
- ⑦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
- ⑧ 신규 주체의 사업참여 촉진·확대
- ⑨ 사회적가치 관련 사무에 부합하는 민간위탁 운영체계 마련
- ⑩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9. 귀하는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개선·정비가 요구되는 절차나 규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위탁사무 유형의 재구분
- ② 민간위탁 사업적격자 선정절차 개편
- ③ 민간위탁 사업적격자 선정 평가체계 재정립
- ④ 법인전입금이나 이행보증금 규정 개편
- ⑤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재정립
- ⑥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재조정
- ⑦ 민간위탁사업 회계 및 재정 절차(기준) 개선
- ⑧ 민간위탁사업 인사 및 고용 절차(기준) 개선
-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0. 귀하는 민간위탁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새로운 행정사무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제도 재정립
- ② 수탁기관의 자율성·자립성 강화

- ③ 위탁자수탁자 간 신뢰와 동반자 관계 구축
- ④ 수탁기관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 ⑤ 민간위탁의 불합리한 제도(절차, 기준) 재정비
- ⑥ 수탁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⑦ 사회적가치 개념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위탁제 모델 도입
- ⑧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실효성 강화
-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1. 최근 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회적가치를 민간위탁제도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중요하게 고려
- ② 어느 정도 고려 필요
- ③ 최소한의 고려는 필요
- ④ 민간위탁과는 관계없음

31-1. (31번의 ①②③응답자만) 그렇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 ()

- ①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기본권적 가치
- ② 인권, 평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둘러싼 가치
- ③ 자치와 참여, 분권 등을 둘러싼 가치
- ④ 공동체(지역사회) 재생이나 지역 상생
- 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⑥ 안전, 환경, 생태 등을 둘러싼 가치
- ⑦ (지역사회)복지시설 제공, 돌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치
- ⑧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창출
- ⑨ 경제적 이익, 효용 극대화를 둘러싼 가치
- ⑩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1-2. (31번의 ①②③응답자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무가 수행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민간위탁제도를 그대로 준용
- ② 현재의 민간위탁제를 준용하되, 운영주체에게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
- ③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적 틀 안에서 혁신적인 운영모델 개발
- ④ 현재의 민간위탁제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도적 모델 도입·운영
- ⑤ 민간위탁제 방식이 아닌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2. 귀하는 향후 민간위탁제 운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위탁사무에 대한 공동의 책임주체
- ② 대등한 당사자관계 확립
- ③ 상호협력적 관계의 확립
- ④ 엄격한 관리자로서 행정(위탁기관) 위상 확립
- ⑤ 현재 관계로도 적정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3. 귀하는 민간위탁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재정적 자립기반 확보
- ② 자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관리지침 제·개정
- ③ 위탁기관의 인식 전환과 의지
- ④ 수탁기관의 전문성·역량
- ⑤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사업형태를 전환
- ⑥ 수평적 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제도 도입
- ⑦ 현재 방식으로도 충분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3-1. 귀하는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어떤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연간 사업계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② 연간 사업예산의 편성 및 운용
- ③ 조직 내 인사·조직의 설치 및 변경
- ④ 회계의 운용(정산절차, 성과인센티브 등)
- ⑤ 개별 사업들의 조정·변경
- ⑥ 사업의 성과평가
-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4. 귀하는 민간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해 수탁기관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실성 없는 주장
- ② 일부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정적 자립기반이 필요
- ③ 수탁기관의 자율성 강화 위해 재정적 자립성 확보 필요
- ④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4-1. 재정적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부금 및 후원금 확보
- ② 유료 회원권 발행
- ③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권 부여
- ④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 ⑤ 자체 수익사업 실행
- ⑥ 민간기금 조성
- ⑦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 ⑧ 공공에 의한 기금 조성
-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5. 귀하는 민간위탁제도에서 운영주체의 지속성과 혁신성을 서로 조화시키는 데 부합하는 위탁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2년 이하
- ② 2년 초과 ~ 3년 이하
- ③ 3년 초과 ~ 5년 이하
- ④ 5년 초과 ~ 7년 이하
- ⑤ 7년 초과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6. 귀하는 향후 민간위탁 사업적격자 선정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다양화
- ② 선정·심사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 ③ 사전·사후적 검증수단 마련
- ④ 사회혁신형 신규사업 영역에서 진입장벽 해소
- ⑤ 충분한 심의를 위한 환경조성
- ⑥ 재계약재위탁 절차의 질적 개선
- ⑦ 현재의 운영방식도 적정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7. 귀하는 향후 예산운용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예산집행의 세밀한 관리 강화
- ②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 예산 운용
- ③ 민간위탁금 이외의 자원(후원금, 기부금 등) 확대 및 자율적 집행
- ④ 정산제도의 대폭 축소·폐지
- ⑤ 예산산정 기준이나 계약심사체계 재정비
- ⑥ 사업규모와 내용에 맞게 예산 현실화
- ⑦ 법인전입금 대폭 축소 또는 폐지
- ⑧ 위탁자가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제 개선
- ⑨ 현재 운영방식도 적정
- ⑩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7-1. 귀하는 민간위탁제에서 예산산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규모 산정
- ② 인건비 산정기준의 전면 재정비
- ③ 재위탁계약 시 예산산정 기준의 재정비
- ④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마련
- ⑤ 현재의 운영방식도 적정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8. 귀하는 향후 민간위탁 평가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 성과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 대폭 보완
- ② 현재 성과평가제도에서 평가과정에 민간(이용자 등)의 참여를 확대
- ③ 현재 성과주의 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가제도로의 전환
- ④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 평가제도 개선
- ⑤ 일부사업(유형)에 대해 새로운 평가제도 적용
- ⑥ 현재의 운영방식도 적정
-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39. 귀하는 수탁기관(운영주체)의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체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 ② 서울시의 통합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③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교육
- ④ 역량강화 요소를 종합성과평가 시 반영(추가)
- ⑤ 현재 운영방식으로도 충분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0. 귀하는 수탁기관(운영주체)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자체 소식지를 발간 및 배포
- ② 운영위원회에 주민·이용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
- ③ 민간위탁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 ④ 수탁기관의 운영과정을 알리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
- ⑤ 운영과정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 ⑥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체 관리
- ⑦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도 충분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1. 귀하는 수탁기관(운영주체)의 운영과정에 이해당사자나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창구 마련
- ②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 ③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유도
- ④ 개방적 운영 노력을 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⑤ 평가과정에 이용자 참여 확대
- ⑥ 주민·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강화
- ⑦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충분
-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42.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민간위탁제에서 탈피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다소 필요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42-1. (42번의 ①②③응답자만) 어떤 형태의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

- ① 신뢰와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협약제도 정립
② 새로운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화와 관련 제도적 모델 도입
③ 총액예산제와 자율적 운영에 기초한 민간위탁 모델 운영
④ 사회적 성과와 적극 연계한 민간위탁제 운영
⑤ 민간보조사업에 준하는 민간위탁 모델 도입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